

##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

###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상 사용하기 위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신고 및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착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신고한 날을 민원처리 기산일로 보아(다만, 도착예정일 2일 내지 5일 전에 신고한 것은 그 기산일을 1일 전으로 본다) 서류검사를 완료하고, 서류검사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보세구역 등에 입고한 사실을 확인 후 즉시 수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관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대상은 현장검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고사실은 수입신고인이 전화, 모사전송(FAX), 서류 등의 방법으로 신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유통관리 등)** ① 시행규칙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대상 수입건강기능식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

2. 기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

②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당해 수입건강기능식품이 수입신고 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검사 등)** ① 시행규칙 제10조관련 별표 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작위표본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국내·외 정보에 의한 검사항목 또는 당해 제품의 기준·규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께 검사할 수 있다.

② <삭 제> (2007. 5. 27.)

**제5조(타기관 검사의뢰)** ①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정밀검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검역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검역소 외의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이하 “타기관 검사”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수입신고인은 수입신고서에 그 검사기관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기관 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해당제품에 대한 검사항목을 지정하여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기준 및 허위·과대표시 등의 확인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건강기능식품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의 처리 등)** ① 수입신고인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 통보된 건강기능식품 중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용외의 용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용도의 검사기관에서 전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증명서와 매매계약서를 갖추어 부적합을 통보한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식용외 용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 료 2 /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식용외 용도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식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식용외 용도변경신청서의 내용을 수입신고인, 관할 세관장 및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용외 용도변경을 통보받은 수입신고인은 통관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최소 수입량의 범위)** ①시행규칙 제10조관련 별표 2 제2호가목(2)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최소 수입량이라 함은 수입신고 한 건강기능식품의 중량이 100키로그램을 말한다.

②〈삭 제〉(2004. 12. 27.)

③〈삭 제〉(2004. 12. 27.)

**제9조(연구·조사용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처리 등)** ①〈삭 제〉(2007. 6. 27.)

②연구·조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연구·조사하기 위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조사 기간 등을 포함한 사용계획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거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입신고 수리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국내외 검사기관과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는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국외공인검사기관인정기준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b>부적합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식용외 용도변경신청서</b>			
수입신고인	수입신고 접수번호		부적합 처분일
	대표자		부적합 수량
	업소명		검사기관
	업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업소명
수요자 (계약자)	업소소재지		
	전화번호	계약수량	
	팩스번호		
업종		변경용도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적합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식용외 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 국립○○검역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용도변경 신청에 필요한 자료			

210mm × 297mm(일반용지 30g/m<sup>2</sup>(제활용품))

## 자료 2 /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